

「강릉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11일

강릉시 의회의장

강릉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-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등(안 제1조~제3조)
- 나. 시행계획의 수립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(안 제4조~제5조)
- 다.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,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규정(안 제6조~제8조)
- 라. 여성폭력 실태조사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규정(안 제9조~제10조)
- 마. 비밀준수에 관한 규정(안 제11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/☎033-640-4033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의견

[보내실 곳]

- 우 편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
- 이메일: 25dead@korea.kr
- 팩 스: 033-640-4070

- 붙임 1. 강릉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조례안 1부.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. 끝.

[붙임 1]

강릉시 조례 제 호

강릉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강릉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른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 등) 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폭력방지정책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주요시책 및 추진방법
2.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
3.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
4.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기관,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)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피해자 보호·지원시설 지원
2.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·홍보
3.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지원
4. 피해자 보호 및 법률, 의료,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 여성폭력의 예방·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
3.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4.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
5.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·평가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
2.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
3.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
4.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으로 한다.

제8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여성폭력 실태조사) ① 시장은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

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.

제10조(디지털성범죄 예방 등) 시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·유포 협박·저장·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1조(비밀준수) 이 조례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강릉시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폐지한다.

[붙임 2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 법 규 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제·개정안 내용	의 건	비 고